

약관은 쉽게, 보험계약자를 고르게 보호해야

보험제도는 우리의 경제생활에 따라다니는 각종의 위험을 위험단체를 전제로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종합평균화함으로써 그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보험회사는 바로 이러한 위험을 많은 가입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하는 위험관리인(risk manager)으로서 대량적 보험계약을 되풀이하여 맺어야 하는 것이다. 보통 보험약관은 바로 위험단체의 관념에 기초를 두고 있는 수많은 보험계약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계약 조항이다.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일반적·보편적·표준적인 계약조항이므로 특수한 보험에 있어서는 이 보통보험약관만으로는 불충분하여 다시 상세한 약정을 할 때가 있다. 이것을 특별보통보험약관 또는 부가약관이라 한다. 이 부가약관은 그것이 정형적인 한 그 명칭의 여하는 묻지 아니하고 실질상의 보통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보통보험약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보험계약상의 法源으로서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다.

보통보험약관이 보험계약관계자를 구속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意思說과 規範說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법원판결(1985. 11. 26 84다가2543)은 자동차보험약관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의사추정의 입장에서



양 승 규
(서울대학교·교수)

면서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약관의 통용이 배제되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보험계약의 단체적 관념에 비추어 볼 때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보험계약은 비록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보험제도의 성질상 단체적 구조를 지니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할부판매약관 등 일반거래약관과 같이 다를 수 없고, 보험단체에 통용되는 규범적 성질을 띠

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정형적인 계약조항으로서 보험계약관계자를 구속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의 기술적·법률적 지식을 갖지 않고, 다만 보험사고의 종류·보험기간·보험금액 및 보험료 등만을 알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보통보험약관에 부당한 내용을 삽입하게 되어 보험계약자는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보험약관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는 것

“

**보험계약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보험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 약관에 대한
규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

이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사회성·단체성 등에 비추어 보험자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또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을 공정하게 하여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약관의 작성, 변경, 사용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규제내용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약관의 인가 : 보험자는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 그 신청서에 기초서류로서 보험약관을 첨부하여야 한다(보업 5조 3항 3호). 보통보험 약관은 보험계약의 정형적인 내용으로서 보험계약의 요소는 물론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게 되는데, 그 사항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 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약관의 규정이 타당한 것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그 보험의 성질과 상법의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그 약관의 규정이 상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상법 663조 참조).

이에 따라 보험자는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보험모집을 하기 전에 먼저 보통보험약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약관의 변경 : 일단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험모집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시장의 변동 등으로 보험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그리하여 보험자가 보통보험약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에게 그 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보업 7조 1항 1호). 이 약관의 변경인가는 한국보험공사의 보험요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보업 7조 2항, 181조).

이와 같이 재무부장관은 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보

험약관의 변경을 인가하게 되는데, 그 밖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험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보업 16조 1항).

(3) 약관의 소급적용명령 : 보험업법 제 16조 2항은 「재무부장관은 보험약관의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후견적 감독의 한 표현이라 할 수 있고, 보험약관의 소급적용은 그 변경인 가된 약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와 비슷한 보험 계약에 대해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4) 약관의 알림 : 보험업법 제 156조 1항 1호는 보험모집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을 정하여 간접적으로 보험약관의 중요한 조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하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일종의 보통거래약관이다. 그러나 보험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담보하기 위한 특수한 제도라는 점에서 보통보험약관이 나 타내고 있는 보험상품은 유형적인 상품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약관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인정하여 건전한 보험시장의 육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약관의 문제는 보험상품의 특성과 연관시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일반거래약관과 같은 기준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보다 쉽게 구성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나, 보험제도의 특성과 보험계약의 법리를 벗어나서는 안되고 모든 보험계약자를 고르게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다. 